

전기차화재안심보험

(약관분류코드 : 3150-0000-20260801)



※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목 차

전기차화재안심보험 보통약관	3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 1 조(목적)	3
제 2 조(용어의 정의)	3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3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3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제 5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5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5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5
제 7 조의 1(선보상 및 구상)	6
제 7 조의 2(중복보상의 조정)	6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6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7
제 10 조(손해방지의무)	7
제 11 조(손해액의 조사결정)	7
제 12 조(현물보상)	7
제 13 조(잔존물)	7
제 14 조(대위권)	7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8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8
제 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	8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8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8
제 19 조(청약의 철회)	8
제 20 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9
제 21 조(계약의 무효)	9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9
제 23 조(조사)	10
제 24 조(타인을 위한 계약)	10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0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10
제 26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0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0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1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11
제 29 조(계약의 해지)	11
제 30 조(위법계약의 해지)	12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2
제 3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2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	12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13
제 34 조(분쟁의 조정)	13
제 35 조(관할법원)	13
제 36 조(소멸시효)	13
제 37 조(약관의 해석)	13
제 38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3

제 3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3
제 40 조(개인정보보호)	14
제 41 조(준거법)	14
제 42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4
전기차화재안심보험 특별약관	15
전기차화재임시거주비 특별약관	15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16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6
공동인수 특별약관 II	17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17
[LMA5399]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II	17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II	17
[LMA5272]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	18
사이버 사건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272)	18

전기차화재안심보험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보험계약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대상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 (1) 건물 관리 업체(법인을 포함합니다.)
 - (2) 충전시설 관리자(법인을 포함합니다.)
 - (3) 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사(부품 제조사를 포함합니다.) 또는 수입사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자가 판매한 전기자동차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 (1) 보험 증권상에 명시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했거나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 (2)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차량 신규등록일이 10년 이내인 차량
 - (3)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차량
- 마. 주차: 대상 전기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여 계속 정지하여 있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바. 충전: 대상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전기 커넥터를 차량에 부착한 순간부터 탈착하는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1 사고당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상 전기자동차의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폭발 및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상 전기자동차 이외에 그밖의 재물에서 발생한 화재(그 결과로

생긴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 포함) 또는 외부 충격(충돌, 접촉, 추락 등) 혹은 사람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대상 전기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위 제 1 호 및 제 2 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 1 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13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의 손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것
2. 대상 전기자동차가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이었고 대상 전기자동차에서 일차적으로 직접 화재가 시작된 사실이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화재사고 사실확인원, CCTV 영상, 충전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

④ 제 1 항에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은 다음 각 호의 재물을 말합니다.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건물
3.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및 공기구, 기계장치 등)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4 항 제 2 호의 '건물'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⑥ 제 4 항 내지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제 1 항의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5.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 만원 이상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 폭발로 생긴 손해
7. 대상 전기자동차 이외에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9. 피보험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손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 그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
10.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차량 구조변경 또는 인증되지 않은 충전설비의 사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11. 침수(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12. 대상 전기자동차의 정비, 수리, 점검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13. 일차적으로 화재가 시작된 대상 전기자동차 자체의 손해
14. 영업손실, 휴차료, 평가손실 등 간접손해
15. 통상적인 마모, 소모, 열화, 부식, 녹 등 점진적인 손상
16.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의 수리비용
17. 화재 발생 사실이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공식 확인서로 입증되지 않는 손해
18. 허위신고, 허위서류 제출, 사기 또는 부정청구와 관련된 손해
19. 대상 전기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재질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

제 5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경찰서 또는 소방서가 발행한 화재사고 사실확인원
4. 영수증 또는 견적서 등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타 보험 가입 내역 및 보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 7 조의 1(선보상 및 구상)에 따라 선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 7 조의 1 제 2 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손해배상청구권 이전 동의서
7. 기타 회사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7 조의 1(선보상 및 구상)

- ① 회사는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의 원인 및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의 손해를 먼저 보상합니다(이하 '선보상'이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선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3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것
 2. 회사가 선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대상 전기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운전자, 제조사, 수입사, 충전시설 관리자, 계약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 및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할 것
 3. 피보험자가 회사의 구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의 구상에 협력할 것에 동의할 것
 4. 피보험자가 제 7 조의 2(중복보상의 조정) 제 2 항에 따른 사후 정산 의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할 것
-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선보상한 경우 제 14 조(대위권)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화재의 원인 및 과실 여부가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합니다.
 1. 일차적으로 화재가 시작된 대상 전기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2. 일차적으로 화재가 시작된 대상 전기자동차의 제조사(부품 제조사를 포함합니다) 또는 수입사
 3. 충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 3 자
- ④ 일부 책임자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추가 부담을 청구하지 않으며, 회사가 최종 부담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제 2 항의 동의를 위반하여 구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7 조의 2(중복보상의 조정)

- ① 회사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의 손해 중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로부터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보상합니다. 다만, 제 7 조의 1(선보상 및 구상) 제 1 항에 따라 선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보상한 후 사후 정산합니다.
 1.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보상받은 금액
 - 가. 자동차보험
 - 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계약
 - 다. 다른 보증서비스 또는 보상제도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책임 있는 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 가. 대상 전기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 나. 대상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
 - 다. 충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라.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 3 자
- ② 제 7 조의 1 제 1 항에 따라 선보상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후에 제 1 항 각호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한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회수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⑤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총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각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보상한도액 / 총 손해액
[총 손해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1) 총 손해액 200 억, 보상한도액 150 억인 경우 →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5%(=150 억/200 억)를 보상
(2) 총 손해액 500 억, 보상한도액 150 억인 경우 →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150 억/500 억)를 보상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계약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계약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10 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1 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12 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잔존물)

회사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 14 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제 7 조의 1 에 따른 선보상 및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고지한 후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1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조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1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29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6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3 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 3 호 및 제 4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⑤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 29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 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9 조(계약의 해지) 제 3 항이 적용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고지한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 1 항 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9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4 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7 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할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3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0 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2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기차화재안심보험 특별약관

전기차화재임시거주비 특별약관

제 1 조(목적)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할 경우 피보험자의 임시거주비(숙박비 및 식비)를 보장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 일간을 말합니다.
- ② 추정복구기간 :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보험금을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대상 전기자동차의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화재임시거주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생긴 위 제 1 호 및 제 2 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대상 전기자동차의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폭발, 파열로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 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 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동일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에 피보험자가 2 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임시거주비는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세대원 각각에게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 1 항에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이지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회사는 상기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조 내지 제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분납)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 2 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 1 항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 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II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사들을 대리하여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LMA5399]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II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번역본>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II

1. 본 보험 약관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특별약관 상에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경우

[LMA5272]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or any endorsement thereto,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ny Cyber Loss.
2. If the 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Cyber Loss sustained by the Company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agreement,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Company.

Definitions

3. Cyber Loss means all actual or alleged loss, damage, liability, injury, compensation,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claim, cost, defence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Compan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mitigation cost or statutory fine or penal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yber Incident.
4. Cyber Incident means: 4.1 an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 or series of related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r the threat or hoax thereof; and/or
- 4.2. a failure to act, any error or omission or accident or series of related failures to act, errors or omissions or accidents; and/or
- 4.3. a breach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or series of related breaches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involving access to, processing of, use of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any data by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5.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ystem or electronic device, including any similar system or any configur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d including any associated input, output or data storage device,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LMA5272

04 October 2016

<번역본>

사이버 사건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272)

1. 이 보험계약(이후 배서 포함)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사이버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이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사이버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용어정의

3. 사이버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이버 사고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배상책임, 신체상해, 보상,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청구, 비용, 방어비용, 각종 경비(손해경감 비용, 벌금, 과태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4. 사이버사고 :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 처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아래의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

- 4.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승인되지 않은 또는 악의적인 단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의 연속이나 협박, 속임수 또는
- 4.2. 적절한 조치 실패, 오류 또는 탈루, 사고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또는
- 4.3. 배임행위,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및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배열, 입력, 출력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또는 예비 시설을 말합니다.

LMA5272